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 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성장, 고용 및 무역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품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공유된 목적과 원칙을 확인한다.

- 가. 이 협정에 따라 양자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완전한 상호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
- 나. 국제표준에 기초한 규정의 양립가능성을 증진하는 것
- 다. 개방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한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수립하는 것
- 라. 인간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 마. 지속적이고 상호 유익한 무역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것

2. 이 부속서는 부록 2-다-1에 규정된 그러한 제품을 제외하고 HS 제40류, 제84류, 제85류, 제87류 및 제94류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차, 시스템 및 그 부품에 적용된다.

제 2 조 규제 수렴

1. 양 당사자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이하 “UN ECE”라 한다)의 틀 내에서 자동차 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이하 “WP.29”라 한다)이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임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WP.29에서의 규정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 하며, WP.29에 의한 새로운 규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채택하도록 협력한다.

제 3 조 시장접근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을 이 조에 따라 자신의 시장에 허용한다.

- 가. 1) 유럽연합의 권한 있는 승인당국은 유럽연합 형식승인의 목적 상 부록 2-다-2의 표 1에 기재된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을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기술규정의 상응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¹⁾
- 2) 대한민국은 부록 2-다-3의 표 1에 기재된 요건을 준수하는 제품을 적용 가능한 대한민국 기술규정의 상응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수용한다.¹⁾
- 3) 양 당사자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부록 2-다-2의 표 2,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부록 2-다-3의 표 2에 기재된 규정을 상응하는 UN ECE 규정 또는 세계기술규정(이하 “GTR”이라 한다)에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이내에 조화시킨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특정 UN ECE 규정 또는 GTR이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의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할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²⁾ 그리고
- 4) 가호1)목 또는 가호2)목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기술규정에 대해, 또는 어떠한 조화도 있지 아니하는 동안 가호3)목의

1) 제3조가호1)목부터 제3조가호3)목까지의 적용 목적상 그리고 적용 가능한 규정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제품의 분류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분류이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 당시에 존재하는 가호3)목 및 가호4)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이 심각한 시장접근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조항에 따라 이 규정이 서명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시장접근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양해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기술규정에 대해, 무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서 시장접근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부과하려는 당사자는 관련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의도된 결정의 근거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²⁾

- 나.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시판을 위하여 각자의 절차가 과도한 지체 없이 완수되도록 보장한다.
- 다. 각 당사자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취해진 결정과 그러한 결정의 근거 및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해당 경제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 라. 양 당사자는 국제적으로 또는 양 당사자 내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규제발전을 고려하여 이 조의 가호에 규정된 제품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적어도 3년마다 이 부속서의 부록 2-다-2 및 2-다-3을 검토한다. 이 부록에 대한 수정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 4 조 규제 수렴의 강화

- 1. 양 당사자는,
 - 가. 언제라도 UN ECE 규정 또는 GTR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나 그러한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부록 2-다-2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부록 2-다-3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UN ECE 규정 또는 GTR과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한다. 그리고
 - 나. 기존 국내 기술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UN ECE 규정 또는 GTR이 UN ECE에 의해 채택된 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UN ECE 규정 또는 GTR을 준수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제품을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대우한다.

다만, 특정 UN ECE 규정 또는 GTR이 도로 안전이나 환경 또는 공중건강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지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한 실증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그러한 이유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공표된다.

2. 당사자가 기존 UN ECE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그러한 UN ECE 규정과 다른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한, 그 당사자는 그 관련 기술규정을 부과하는 이유가 계속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적어도 3년마다 이 기술규정을 검토한다. 이 검토 결과와 그 검토 결과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는 공표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3. UN ECE 규정 또는 GTR이 없고 최소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분야에서, 양 당사자는 그러한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제표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다. 그러한 국제표준의 개발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자가 그러한 분야에서 국내 기술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규정을 근접화할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한다.

제 5 조 최혜국 대우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에 관한 내국세와 배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이 원산지인 동종 제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제품에 부여한다.

제 6 조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

1. 어떠한 당사자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시장에서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와 해당 경제 운영자에게 이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제 7 조 무역을 제한하는 그 밖의 조치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특정적인 그 밖의 규제 조치를 통하여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는 도로 안전, 환경 또는 공중 건강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제 8 조 규정의 적용

1. 당사자가 이 부속서 제3조와 합치되게 UN ECE 요건의 준수 또는 이

와의 조화를 수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UN ECE 형식승인서는 적합성의 추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형식승인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떤 제품이 승인된 형식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알린다. 이 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양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자기 인증한 것을 포함한 제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

가. 그 당사자의 모든 기술규정, 또는

나. 이 부속서 제3조가호에서 규정된 국내 기술규정 및 그 밖의 요건

각 당사자는 제품이 그러한 규정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생산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관련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이 적절한 경우 다음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식승인은 거절될 수 있다.

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모든 기술규정, 또는

나. 이 부속서 제3조가호에서 규정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기술규정 및 그 밖의 요건

4. 이 부속서 제3조가호에 언급된 기술규정 또는 요건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로 안전, 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해 자신의 시장에서 제품의 출시를 거부하거나 그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거부나 다른 쪽 당사자의 제품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일시적 긴급조치는 시행되기 전에 그 조치의 동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되며 충분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쪽 당사자와 공급자에게 통보된다.

제 9 조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1. 자동차 및 부품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고 시장접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자는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따라, 이 부속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 및 질문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서면으로 응답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기 위해 그러한 조치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은 이 부속서의 효과적 이행을 담당하고,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작업반은 다음을 담당한다.

가. 이 부속서 제2조에 맞게 WP.29 작업에 대해 양 당사자의 협력을 준비하는 것

나. 다음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 제3조에 규정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감독하는 것

1) 제3조가호3)목에 규정된 조화 과정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논의하는 것

2) 제3조가호4)목에 상정된 협의를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3) 제3조라호에 규정된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마련하는 것

다. 이 부속서 제4조제2항에 기술된 검토를 논의하고 이 부속서 제4조제3항에 규정된 협의를 개최하는 것

라. 적절한 경우 이 부속서 제6조 및 제8조에 상정된 통보를 논의하는 것

마. 다른 경로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권고하는 것, 그리고

바. 적절한 경우 부록 2-다-3의 표 1에 규정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이하 “OBD”라 한다)와 배출에 대한 경과조치의 실제 이행에 관한 모든 사안

3. 작업반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소 1년에 한 번 회합한다. 그 회합은 통상적으로 WP.29의 회합 또는 자동차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논의의 장과 연계하여 개최된다. 작업반은 또한 전자우편, 전화회의나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이행

1. 제14장(분쟁해결)은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
 - 가. 이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긴급 사안으로 간주된다.
 - 나. 제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에 예견된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 다. 제14.6조(패널 잠정보고서)에 따른 패널 잠정보고서의 제출에 예견된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 라. 제14.7조(중재패널판정)에 따른 중재패널판정의 제출을 위하여 예견된 기간은 120일에서 75일로 단축된다. 그리고
 - 마. 다음 문장이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판정을 지체 없이 준수한다. 즉시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피소 당사자가 준수를 위해 입법행위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채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합리적 기간은 통상적으로 중재패널판정 제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의 특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